# 준 비 서 면

- 사 건 2015구합 1234호 0000처분취소
- 원 고 000
- 피 고 000000장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.

# 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00처분의 징계사유 중에서 \*\*\*은 ###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며, @@@을을 했다고하더라도 0000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.

# 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

#### 가.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

- 1) 원고는 \*\*\*가 00되었고, 000하였으므로 000징계사유가 없어 징계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.
- 그러나 원고가 \*\*\*한 것은 \*\*\*가 아니고, \*\*\*라는 것이지, \*\*\*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

그리고 00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00가 없을지라도 \*\*\*할 수 있고,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과 \*\*\*를 한 것은 공무원 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했습니다.

2) 또한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###를 하고, \*\*\*에게 "@@@", "######", "###", "%%%%%." 라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\*\*\*를 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됩니다. 그리고 당연한 논리로 직무수행상의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\*\*\*를 이유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.

# 나.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

1) 원고는 2000. 8. 31.에 \*\*한 것이 피고의 행정조치 및 위법한 \*\*\* 때문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피고의 행정 절차에는 어떠한 위법함이 없습니다. \*\*\*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"\*\*\*\*, -----, \*\*\*\*\*" 판결 취지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고, \*\*\*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. 원고의 \*\*\*\*한 행위는 \*\*\*\*하여 징계에 대한 \*\*\*

이며, 과거 같은 사실로 징계까지 받았고,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00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할 정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 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.

2) 그리고 「000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제0조(징계의 기준)에 의하더라도, 원고의 경우는 여러 비위사실들이 모두 "\*\*\*\* 있는 경우"에 해당하는 비위들로서 이는 "00-\*\*"에 해당하는 비위라고 볼 수 있으며, 비위사실의 경합, 원고의 과거 유사 징계 전력 및 000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\*\*처분은 결코 과중하지 않습니다.

# 3. 결론

따라서 원고가 \*\*\*\*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000처분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, 원고의 비위행위들에 비추어 이 사건 00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없습니다.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. 1. .

피고 전라북도교육감

소송수행자 0 0 0

0 0 0

0 0 0

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귀중